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51 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
-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- 3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
제24조제2항 중 "휴업"을 "30일 이상 휴업"으로, "제21조"를 "제21조제 2항제2호 또는 제3호"로 한다.

제45조제1호 중 "제2항"을 "같은 조 제2항제1호"로 한다.

제48조제1항제2호 중 "제21조제2항을"을 "제21조제2항제1호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제21조제2항을"을 "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21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제21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) ① (생 략)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 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 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하여야 한다. 신고하여야 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변경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 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 터 30일 이내 ③ ~ ⑥ (생 략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| 제24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) ① 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----- <u>30일 이상 휴업</u> ----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

였음에도 불구하고 <u>제21조</u>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- 제45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
 (생 략)
- 제4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제21조제2항을</u> 위반하여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
 - 3. 4. (생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

제21조제2형	<u>}</u>
제2호 또는 제3호	_
	_
<u>.</u>	
③·④ (현행과 같음)	
제45조(수수료)	_
	_
	_
1 같은 조 제	2
항제1호	_
2.·3. (현행과 같음)	
제48조(과태료) ①	
	_
	_
1. (현행과 같음)	
2. 제21조제2항제1호를	_
	_
3.·4. (현행과 같음)	
, _ , ,	
②	_
	_
1.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	<u>3</u>

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호를 -----아니한 자

2. ~ 5. (생 략)

③ (생 략)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